

제 2 2 1 호

1 9 7 2 . 3 . 3 1 .

등록번호 : 제 3 9 호

등록년월일 : 1953 년 6 월 18 일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편집인 : 공보실장 손활수

인쇄 : 세진공사

시 보

이 영구보존문서는 마이크로

필름으로 촬영되었음.

1997. 3. 11

서울특별시 시정과장

차 례

조 례..... 3

고 시..... 18

규 칙..... 6

사 령..... 14

공 고..... 24

서울특별시

시 보 세 분 목 차

1. 조	례	3
제 695 호	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	3
제 696 호	서울특별시립위생연구소 설치조례	4
제 697 호	서울특별시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조례	5
2. 규	칙	6
제 1206 호	서울특별시시민회관직제중 개정규칙	6
제 1207 호	서울특별시시장사무취급규칙중 개정규칙	7
제 1208 호	장관소유자동차의 관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시행 규칙중 개정	10
제 1209 호	서울특별시설계심사위원회운영규칙	11
제 1210 호	서울특별시설계심사위원회운영규칙폐지에 관한 규칙	13
3. 사	령	14
4. 고	시	18
제 29 호	도시계획소로신설	18
제 30 호	서울도시계획일부변경	18
제 31 호	도시계획소로일부변경	19
제 32 호	서울도시가스공급설비시설결정	19
제 33 호	사방지정지해제	20
5. 공	고	24
건설부공고제 13 호		
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취소		24
제 53 호	영등토지구획정리사업추가지구시행인가	24

조 례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립청소년직업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
에 공포한다.

1972 년 2 월 28 일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하 점 생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695 호 개정 72. 2. 28

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학교
설치조례중개정조례

제 1 조 (목적) 청소년에게 국민생활에 필
요한 교양과 직업에 관한 지식 및 기
능을 습득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
청소년직업학교 (이하 직업학교라 칭한다)
을 설치한다.

제 1 조의 2 (명칭과 위치) 청소년직업학
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.

제 2 조 (조직등) ①직업학교에 교장, 교감
및 전임강사와 사무직원을 두되 서울특
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(이하 교육감이라
칭한다)이 이를 임용한다.

②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
지휘 감독한다.

③교장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장유고시에
는 교장직무를 대리한다.

④전임강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
장리하며, 학생을 교수한다.

⑤사무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
담당한다.

⑥전임강사 및 사무직원의 정원은 예산
범위내에서 교육감이 이를 정한다.

⑦직업학교의 필요에 따라 시간강사와
교용원을 두되 예산범위내에서 교장이
이를 임용한다.

제 3 조 (설치과) ①직업학교에 제 1 조의
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를
둔다.

②전항의 과는 교육감이 이를 정하며
당해기의 개강 1개월전에 이를 공포한
다.

제 4 조 (수업시간) 직업학교의 수업시간
은 각과별로 교육감이 정하며 매년 1
회이상 실시하되 1회의 수업시간은 3
개월이상이어야 한다.

제 5 조 (수강자격) 직업학교의 수강자격
은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. 다만 교
육법, 제 81 조에 규정된 각급학교에 재
학중인자는 수강할 수 없다.

제 6 조 (수업료등) ①직업학교에 수강교
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료와 실
험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전항의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는 마
로 조례로서 정한다.

제 7 조 (보수) 교직원에 대한 보수는
교육감이 정한다.

제 8 조 (시행규칙) 이조례 시행에 관하
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규
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별 포

명	칭	위	치
1. 서울 남대문 국민학교 부설청소년 직업학교		중구 남대문로 4가 45의 1	
2. 서울성동공업고등학교 부설청소년 직업학교		성동구 신당동 183의 1	
3. 서울영등청소년 직업학교		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8	
4. 서울 북공업 고등학교 부설청소년 직업학교		성북구 하월곡동 90의 1	
5. 서울서대문 국민학교 부설청소년 직업학교		서대문구 정동 27의 3번지	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
특별시립위생연구소설치조례를 이에 공포
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1972년 3월 10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696호

서울특별시립위생연구소설치조례
제1조(목적) 시민보건향상과 보건행정
의 발전에 기여하고 위생에 관한 시
험, 조사 및 연구를 하기 위하여 서
울특별시립위생연구소(이하연구소라 한다)
를 둔다.

제2조(위치) 연구소는 서울특별시 용산
구 한남동 726의 78호에 둔다.

제3조(직무) 연구소는 다음 사항을
관장한다. ①약전약품, 일반약품등의
시험,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
②화장품, 위생용품, 의료용구, 독극물,
화공약품 및 농약등의 시험조사 및
연구에 관한 사항

③일반식품, 청량음료, 유제품 및 식품

첨가물등의 시험, 조사 및 연구에 관한
사항

④공해의 시험, 조사 및 연구에 관한
사항

⑤기타 각종 전염병균, 바이러스 및
미생물학적 시험, 조사 및 연구에 관
한 사항

제4조(공무원) ①연구소에 소장을 두
되 소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지방공무
원으로 보한다.

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
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.

③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
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5조(기구) 연구소에 필요한 부와
과를 두되 그 명칭과 사무분장은 규
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
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 특별시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1972년 3월 13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697호

서울특별시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건설종합계획심의회(이하 심의회라 한다)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

1.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·지침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
2. 건설종합계획안에 관한 사항
3. 구건설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4. 국토조사의 성과에 관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16인의 위원으로서 조직한다. 다만 구건설계획을 심의할 경우에는 관계구청장은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위원이 된다.

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부시장 및 국장 4인이내
2. 시내의 건설관계 지방관서장 3인이내
3. 국토계획에 관한 학식·경험이 있는 자 5인이내
4. 경제·공업 및 경영학자와 공업

기술자 각 1인을 포함한 4인이내

④전항 3호 및 4호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 다만 최초에 위촉되는 위원반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보결위원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.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및소집)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개최 2일전에 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의사정족수) 심의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분과위원회) ①심의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분과위원회는 심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.

③분과위원회는 심의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.

제8조(전문위원) ①국토계획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학식·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인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전문위원은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학식·경험이 있는 자라함

은 공업·농업·수산업·광업 건설 및 경제·사회·지리등의 각부분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.
제9조(보고등) 심의회는 제2조 각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(서부직원) ①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및 도시계획국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.

1. 간사장 1 인
2. 간사 2 인
3. 서기 약간인

②간사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과장 및 도시계획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획관리관실 및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한다.

③간사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하며 서기는 간사장 및 간사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.

④간사장과 간사는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11조(일당,여비) 심의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1972년 3월 13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698호

서울특별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
서울특별시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여비정액)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의 예에 의한다.

별표1과 별표2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시민회관 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1972년 2월 21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1206호

서울특별시 시민회관직제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시민회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1항중 "지방건축기사, 지방건축기사보"를 "지방기계기사, 지방기계기사보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시장사무취급규칙중 개정규칙
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시장 양택식
1972 년 월 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207 '호

서울특별시시장사무취급규칙중개정규칙
서울특별시시장사무취급규칙중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(허가 기준) ①시장개설허가기준은
다음과 같다.

1.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
한다.
2.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로
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일 경
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있어야
한다.
3. 대지면적은 300평이상 1,000
평이내라야 한다.

②전항의 규정에 저촉된다 하더라도
동의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
우에는 특별한 조건을 부쳐서 허가할
수 있다.

제 3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을 각각 다음과
같이 한다.

②구청장은 시장으로 부터 관계법규의
저촉여부에 관한 사전확인을 얻은후
시설승인을 한다.

구 청 접 수 시

1. 개설허가신청서
2. 토지등기부등본
3. 건축대지증명
4. 가설제도(안내도·배치도)

③시설승인신청서에는 설제도(지적도상
에 건물배치도·평면도·정면도·측면도)
업무규정 사업계획서를 첨부 제출케
하고 법제 5 조 동시행령 제 1 조 및
제 2 조의 규정에 적합하면 시설을 승
인한다.

제 19 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를 각각 다
음과 같이 한다.

1. 건축허가신청은 점포 20개미만으
로 되어 있으나 사후에 20개이상
의 점포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인정
될때 이경우 점포당 2.5 평이상을
기준한다.
2. 단일 건물은 물론 1인 또는 수
인 소유대지상의 건물이라도 연립된
2개이상의 건물이 20개이상의 점
포로 구성되어 유사시 장화할 우려
가 있다고 인정될때
3. 기타 유사시장의 형태를 이룰수
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장의 질서유지
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

제 21 조 10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0. 시장 10월 정기검사

별지제 1 호 제 3 호 제 8 호 내지 제 14 호
제 16 호 및 제 17 호서식중 첨부서류를
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별지제 1 호서식 시장개설허가신청서

본 청 에 보 고 시

좌 동

5. 지적도 5 부

6. 위치도 3 부

※ 업무규정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
은 시장시설 승인전에 보완

별지 제 3 호서식

시장시설보완및개장승인신청서구 청 접 수 시본 청 에 보 고 시

1. 건물등기부등본

1. 건물등기부등본

2. 소방시설증명

2. 소방시설증명

3. 납세증명 (국세 · 시세)

별지 제 8 호서식

시장개설허가갱신신청서구 청 접 수 시본 청 에 보 고 시

1. 구허가증

1.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

2. 납세증명

3.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

(매매인 경우)

별지 제 9 호서식

시장개설자명의변경승인신청서구 청 접 수 시본 청 에 보 고 시

1. 법인등기부등본

공문으로 결과만 보고

2. 변경결의회의록사본

3. 납세증명 (국세 · 시세)

별지 제 10 호서식

시장개설대표자변경승인신청서구 청 접 수 시본 청 에 보 고 시

1. 회의록사본

공문으로 결과만 보고

2. 구대표자사임서
3. 신대표자취임승락서
4. 납세증명 (국세 , 시세)

별지 제 11 호서식

시장시설 (건물 , 토지) 변경신청구 청 접 수 시본 청 에 보 고 시

건물확장시

1. 건축대지증명
2. 설 계 도
3. 토지등기부등본

1. 건축대지증명
2. 설계도 (구척도)
3. 토지등기부등본

건물축소시

1. 시설배치도
2. 평 면 도

1. 시설배치도

대지 확장시

1. 건축대지증명
2. 토지등기부등본
3. 토지임대차계약서

과 동

사본 및 인감증명서

4. 지적도 3 부

대지축소시

1. 지 적 도

과 동

별지 제 12 호서식

시장명칭 변경허가신청서구 청 접 수 시본 청 에 보 고 시

1. 변경결 의 회의록사본
2. 납세증명 (국세 , 시세)

공분으로 결과만 보고

별 지 제 13 호서식

시장업무규정 변경허가신청서

구 청 접 수 시본 청 에 보 고 시

1. 주주총회의사록

업무규정개정안

2. 업무규정개정안

별지제 14 호서식

시설사용료징수승인신청서구 청 접 수 시본 청 에 보 고 시

1. 대차대조표

공문으로 결과만 보고

2. 수지계산서

3. 평 면 도

4. 납세증명 (국세 . 지방세)

별지제 16 호서식

시 장 폐 지 신 고 서

구 청 접 수 시본 청 에 보 고 시

회의록 사본

공문으로 결과만 보고

별지제 17 호서식

시장시설기한연기승인신청서구 청 접 수 시본 청 에 보 고 시

1. 시설공정표

공문으로 결과만 보고

2. 사유서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장관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시행규칙등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양 택 식

1972 년 3 월 7 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208 호

장관소유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

특별조례시행규칙중개정

장관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 2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다만 조례 제 3 조제 3 항 단서에 규정한 서울특별시시장의 확인은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동차검사 대행업자가 발급하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불능증명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。

서울특별시 설계심사위원회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。

서울특별시 시장 양택식

1972 년 3 월 7 일

◎서울특별시규칙 제 1209 호

서울특별시 설계심사위원회운영규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설계심사위원회규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설계심사위원회 (이하 위원회라 한다)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함을 목적으로 한다。

제 2 조 (위원장 및 위원) 위원장은 기획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도시계획국장, 건설국장, 수도국장, 한강건설사업소장, 지하철건설본부장, 도시계획국장, 도시계획과장, 구획정리제 1 과장, 토목과장, 하수과장, 기전과장, 녹지과장, 주택건설과장, 한강건설사업소계획조사과장, 지하철본부계획조사과장, 토목시험소장이 된다。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。

제 3 조 (개별심의회) ① 시설공사 분야별 개별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심사안건의 내용을 감안하여 개별심의회 위원을 지명한다。

② 개별심의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안전을 심사 결정한다。

제 4 조 (심사범위) 위원회는 다음의 각

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。

1. 설계도의 타당성
2. 공정 및 공법의 타당성
3. 공사특별시방의 타당성
4. 특수재료의 타당성
5. 기타 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

제 5 조 (심사방법) 위원회의 심사방법은

1 차심사에서 기본계획설계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가 완료된 후 2 차심사에 부하여 1 차심사 내용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 1 차심사에서 2 차심사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。

제 6 조 (심사요구)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에서는 회의개최 5 일전까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。

1. 제 1 차심사서제출서류

- 가. 설계심사요청서 (서식 1 호) 20 부
- 나. 기본계획설계도 (다만 년차분은 전체 기본계획설계도에 당년도분표시) 20 부
- 다. 기타 설계기초자료 20 부

2. 제 2 차심사서제출서류

- 가. 설계심사요청서 (서식 1 호) 20 부
- 나. 설 계 도 2 부
- 다. 제 1 차심사서와의대조표 20 부

제 7 조 (회의) 위원회 또는 개별심의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한다.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。

제 8 조 (재안설명) 설계심사를 요청한 부서의 주관관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

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문에 충분한 설명은 하여야 한다。

제 9 조 (서면의결) 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 부의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。

제 10 조 (심사결과처리) 위원장은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심사를 요청한 주관부서의 장

(서식 제 1 호의 1)

에게 통보한다。

제 11 조 (감사및서기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영선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。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。

1972 . . .

설 계 심 사 요 청 서

국 과

사 업 소

구

서 울 특 별 시 설 계 심 사 위 원 회

설계심사위제

호

1972 . . .

수 신

제 목

설계심사결과통지서

1. 1972 . . .

의뢰한 심의안건에 대한 서울특별시 설

계위원회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。

- 가. 안전명
- 나. 심의결과
- 다. 특기사항

서울특별시설계심사위원회위원장

- 1. 심사안전
- 2. 공사개요
- 3. 시공기간
- 4. 기타사항

서울특별시설계심의위원회규칙에 관한
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1972년 3월 7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210호

서울특별시설계심의위원회

규칙 폐지에 관한 규칙

1971.6.25자 서울특별시규칙제
1168호 서울특별시설계심의위원회 규칙
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사령	윤 경 숙
◎1972.2.22. 지방행정서기보 유 제 도 종로구보건소 파견근무를 대체함	조전부 지방약무기원보*에 임함 중부병원 근무를 명함
◎1972.2.28. 행정 사무관 김 동 일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개량과 계획제장에 보함	정 영 보 조전부 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 최 정 식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명함
행정 사무관 정 환 국 지방행정 사무관에 임 함 주택건설과 서무제장에 보함	◎1972. 3. 3. 서 기 관 진 원 섭 민방위과장에 보함 서 기 관 도 지 훈 공무원교육원장 직무대리를 명함
행정 사무관 이 상 익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운수운영과 운수제 3 계장에 보함	지방서기관 김 영 수 물동경제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지 적 기 사 조 규 일
행정 사무관 이 희 찬 지방행정 사무관에 임함 관리제 1 과 보상제장에보함 ◎1972.3. 1.	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적기사에 임 함 1 호봉을 급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
지방행정주사 국 규 황 72.3.1 ~ 72.3.31 까지 인사과 차출근무를 명 함 ◎1972.3. 2.	지 적 기 사보 서 관 수 서울특별시 전입을명함 지적기사보에 임 함 4 호봉을 급 함
최 세 탁 조전부 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종로구보건소 근무를명함	지방보건기사보 지 병 국 서울특별시 전입을명함 지방보건기사보에 임함 6 호봉을 급 함
이 명 숙 조전부 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아동병원 근무를명함	종로보건소 근무를명함

임시사환에 임함 월수당 8,200원을 급함 내무국총무과 (서무과파견) 근무를 명함	황 인 찬 총무과 (예산과파견) 근무를 명함 이 정 순
임시사환에 임함 월수당 8,200원을 급함 내무국총무과 (공보실파견) 근무를 명함	정 경 숙 총무과 (보건제 1 과파견) 근무를 명함 박 종 화
임시사환에 임함 월수당 8,200원을 급함 내무국총무과 (보건제 2 과파견) 근무를 명함	배 정 숙 총무과 (세정과파견) 근무를 명함 서 영 자
임시사환 김 미 순 제 2 부시장실 파견근무를 명함	임시사환에 임함 월수당 8,200원을 급함 총무과 (관리제 2 과파견) 근무를 명함 ◎1972. 3. 4.
임 공 재 총무과 (녹지과파견) 근무를 명함	지방행정사무관 김 상 옥 월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◎1972. 3. 5.
이 원 덕 임시사환에 임함 월수당 8,200원을 급함 총무과 (시민과파견) 근무를 명함	지방행정서기보 장 서 규 지방행정서기에 추서함 ◎1972. 3. 6. 송 세 훈
유 재 숙 임시사환에 임함 월수당 8,200원을 급함 총무과 (운수지도과파견) 근무를 명함	지방보건지원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성동구보건소 근무를명함 엄 기 수
김 은 옥 임시사환에 임함 월수당 8,200원을 급함	지방동신기사에 임함 1호봉 (근속가봉월 3 회) 을 급함 이 봉 구
조건부 지방보건기사보에임함	조건부 지방보건기사보에임함

동대문구 보건소 근무를 명함	총무과 근무를 명함	지방기계 기사 최 창 규
◎ 1972. 3. 7.	자동차정비창 근무를 명함	이 동 운
서 기 관 이 경 삼	남부자동차사업소 근무 를 명함	서 원 도
국가공무원법 제 78 조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 거 견책에 처함	중부자동차사업소 근무 를 명함	이 한 용
토 목 기 좌 김 경 길	자동차정비창 정비과장 직무대리를 명함	
국가공무원법 제 78 조 제 1 호 에 의거 견책에 처함	◎ 1972. 3. 15	
◎ 1972. 3. 8	지방비서관 방 일 호	
지방행정주사 정 영 태	김 진 수	
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	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	
5 호봉을 급함	◎ 1972. 3. 16	
단속과 단속계장에 보함	지방기계 기사 김 상 운	
◎ 1972. 3. 9	정부민원상담실 파견근무 를 명함	
전 기 기 좌 김 상 운	◎ 1972. 3. 11	
지방건축지원보 오 세 호	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	
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	지방행정사무관 박 준 환	
지방행정사무관 박 준 환	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및 제 4 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 위를 해제함	
중구보건소 노 윤 수	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	
◎ 1972. 3. 13	송 형 철	
지방기계 기사 송 형 철	한 광 환	

조건부 지방행정사무관에

임함

동원과 동원제 2 계장에

보함

방 일 호

조건부 지방행정사무관에

임함

통계과 통계기준 계장에

보함

김 진 수

조건부 지방행정사무관에

임함

지하철건설본부 관리과

사무계장에 보함

◎1972.3.17

정 재 기

조건부 지방보건기원보에

임함

마포구보건소 근무를명함

(위생 시험사)

한 상 훈

조건부 지방보건기원보에

임함

성북구보건소 근무를명함

(위생 시험사)

구 명 자

조건부 지방보건기원보에

임함

영등포구보건소 근무를

명함

(위생 시험사)

신 대 일

조건부 지방지적기원보에

임함

영등포구 근무를 명함

박 찬 일

조건부 지방보건기원보

에 임함

남부병원 근무를 명함

(임상병리사)

◎1972.3.18

지방행정사무관 박 인 영

행정사무관에 임함

1호봉(근가7회)을급함

운수지도과장 직무대리

를 명함

◎1972.3.20

지방행정서기 김 성 운
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

1.2 호의 규정에 의거

견책에 처함

지방행정서기보 고 철 수
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

1.2 호의 규정에 의거

견책에 처함

지방행정서기 이 정 모
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

1.2 호의 규정에 의거

감봉 3 월에 처함

지방행정서기 우 대 영
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

1.2 호의 규정에 의거

견책에 처함

서 기 관 김 제 량

전시국가지도회의본부요원

근무

(72.4.3-4.17)를 명함

서 기 관 김 형 무

전시국가지도회의 본부요원

근무

고 시

◎서울특별시 고시제 29 호

1.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 소로 신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
3. 노선조서

구 분	소 로	류 별	번호	폭원	연 장	기 점	중 점
신 설	소 로	4		4	12	상도동 128 앞	상도동 122
"	"	"		"	73	" 123-3 양	"
신 설	"	3		6	27	충정로 3가 3 - 260	충정로 3가 3 - 262
"	"	4		4	35	" 3 - 378	" 3 - 394
"	"	4		4	50	" 3 - 378	" 3 - 400
"	"	"		"	32	" 3 - 326	" 3 - 368
"	"	"		"	54	" 3 - 410	" 3 - 401
"	"	"		"	109	" 3 - 331	" 3 - 401

도면은 서울시 청에 보관함

1972.3.9

◎서울특별시 고시제 30 호

서울도시계획일부변경

서울특별시 고시제 11 호 (72.1.12)로

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내

가로 시설중 일부 변경을 도시계획법

제 12 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함

가. 가로변경조서

서울특별시 장

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
영등포구성 시민봉사일에 비치하여 토지
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임

1972.3.10

서울특별시 장

구 분	등 급	류 별	번호	폭원	연 장	기 점	중 점	비 고
기 정	소 포	2		8M	590M	봉천동산 17-3	봉천동산 17-3	폭원축소
변 경	"	3		6"	520M	"	"	
기 정	"	3		6"	420M	"	"	폭원축소
변 경	"	4		4"	420M	"	"	
					140M			

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첨부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1 호

도시계획소로일부변경결정고시(확정)

1.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소로일부변경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다. 노 선 조 서

이 고시함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구 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 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 정	소 로	2		6	194	북가좌동 83 의 3	산 13 - 1	밀이 축소
변 경	"	2		"	180	"	"	
기 정	"	"		"	200	"77	"	
변 경	"	"		"	168	"	북가좌동산 13-1	"
기 정	"	"		"	80	"산 13-1	"	위치 변경
변 경	"	"		"	80	"	"	
기 정	"	2		"	626	상도동 179-3	상도동 34-9	
변 경	"	"		"	626	" 169 - 13	" 56-1	일부선형변경

1972.3.11.

서울특별시 장

도면: 별첨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 호

서울도시가스공급설비시설결정 및 지적확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 설비시설결정 및 지적확정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

다음과 같이 고시함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영등포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임.
3. 가스공급설비신설조서

구 분	위 치	시설면적	비 고
가스공급설비	영등포구 염창동 201 " 목 동 15-16외 10 필지 (김포지구 546구획)	17,111 ^{m²}	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

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보관

1972.3.11

서울특별시 장

◎서울특별시 고시 제 33 호

사 방 지 정 지 해 제 고 시

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
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정지를 해제
합니다.

1. 해제고시 내역

별 천

1972. 3

서울특별시 장

소 재 지			지목	지 적	지 정 면 적	해 제 면 적	잔면적	해제사유	소 유 자	
구	동	지번							주 소	성 명
동대문	면 목	산 27	임야	1.2000	1.2000	0.5304	0.6626	타용도사용	동대문구창신동13	이 용근
성 동	명 일	산 7-1	"	3.9500	3.9500	3.9500	0	"	중앙개발주식회사	이 서구
"	암 사	40-3	"	3.8200	3.8200	3.8200	0	"	중구저동2가69 재단법인	영 락원
"	명 일	4	"	1.3600	1.3600	0.9520	0.4010	"	중구을지로1가50	이 서구
		3 필지	"	9.1300	9.1300	8.7220	0.4010			
서대문	갈 현	139-3	"	1.9124	1.9124	1.9124	0	"	청파동2가59-2	박 병천
"	신 영	29-2	"	0.0608	0.0608	0.0608	0	"	서대문구송월 동33-1	엄 은현
"	"	29-5	"	0.0110	0.0110	0.0110	0	"	"	"
"	병 천	4-23	"	0.0029	0.0029	0.0029	0	"	국	
"	성 산	24	"	2.1500	0.7900	0.2400	0.5500	"	마포구서교동388-1	박 관 서 외 3인
"	연 회	99-12	"	0.0020	0.0020	0.0020	0	"	서대문구연 회 농산 99-12	고 광철
"	갈 현	134-1	"	0.1700	0.1700	0.1700	0	"	마포구도화동323	신 전 수 외 1인
"	연 회	99-9	"	0.0106	0.0106	0.0106	0	"	서부세무서장	
"	"	99-10	"	0.0103	0.0103	0.0103	0	"	"	
"	"	99-13	"	0.0103	0.0103	0.0103	0	"	"	
"	"	99-14	"	0.0101	0.0101	0.0101	0	"	"	
"	"	99-15	"	0.0108	0.0108	0.0108	0	"	"	
"	"	99-18	"	0.0025	0.0025	0.0025	0	"	"	
"	남가좌	11-3	"	0.3121	0.3121	0.3121	0	"	서대문구연 회 동 400-49	박 관양
"	"	11-12	"	0.0119	0.0119	0.0119	0	"	"	"

소 재 지			지 목	지 적	지 정 면 적	해 제 면 적	전 면 적	해제사유	소 유 자	
구	동	지번							주 소	성 명
서대문	연 회	99-16	임야	0.0112	0.0112	0.0112	0	타당도사용	서부세무서장	
"	평 창	6-142	"	137.1000	137.1000	88.7616	48.3314	"	한신부동산	
"	"	6-2	"	118.1913	118.1913	1.8124	116.3719	"	"	
"	신 사	77	"	1.2200	1.2200	1.2200	0	"	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265	황 차규
"	"	78-1	"	1.0227	1.0227	1.0227	0	"	"	"
"	"	78-2	"	0.2026	0.2026	0.2026	0	"	"	"
"	"	87	"	0.6500	0.6500	0.6500	0	"	"	"
"	연 회	4-24	"	0.2829	0.2829	0.2129	0.0700	"	중구저동2가46-11	신 재삼
"	불 광	59-49	"	0.0920	0.0920	0.0920	0	"	성북구 하월곡동 88-494	김 윤경
"	평 창	6-26	"	0.0315	0.0315	0.0315	0	"	종로구원남동66-7	유 임 열
"	갈 현	139-4	"	0.1405	0.1405	0.1405	0	"	서대문구갈현동255	김 형구
"	남 파	10	"	1.2000	1.2000	1.2000	0	"	서울시교육감	
"	"	8-1	"	0.4010	0.4010	0.4010	0	"	"	
"	"	8-5	"	0.1310	0.1310	0.1310	0	"	"	
"	수 색	13-11	"	0.0120	0.0120	0.0120	0	"	서대문구수색동 13-11	김 석학
"	홍 은	11-21	"	1.5322	1.5322	1.5322	0	"	성북구삼성동 175-274	유 문호
"	신 촌	9-1	"	33.2000	33.2000	0.3910	32.8020	"	연세대학교	최 재유
"	홍 제	25-14	"	0.0207	0.0207	0.0207	0	"	서대문구홍제동	권 용설
33필지				300.2203	298.8603	100.7210	198.1323			
용 산	한 남 산	8-74	"	2.3100	2.3100	2.3100	0	"	이화학당이사장	서은숙
영등포	신 립 산	110	"	1.7500	1.7500	0.0900	1.6600	"	노량진동314	김 종훈
"	"	111	"	2.7300	2.7300	0.7300	2.000	"	"	"
"	"	114-2	"	0.7200	0.7200	0.2001	0.5129	"	한국전력주식회사	김 일 환
"	"	126	"	0.4900	0.4900	0.4900	0	"	영등포구신립동 599	이 영진
"	상 도	65-40	"	6.4721	0.9800	0.9800	0	"	성북구미아동 616-100	김 봉섭

소 제 지			지목	지 적	지 정 면 적	해 제 면 적	전 면 적	해제사유	소 유 자	
구	동	지번							주 소	성 명
영등포	봉 천	160-10	임야	0.0201	0.0201	0.0201	0	타용도사용	용산구 후암동 389-13	전제전
"	오 류	35	"	0.2100	0.2100	0.2100	0	"	용산구 청파동 1가 160	손영도
"	"	15-7	"	2.2700	2.2700	0.9000	1.3700	"	국	
"	화곡	22-23	"	0.3600	0.3600	0.3600	0	"	영등포구 봉천동 710	윤병기
"	목동	31-1	"	6.5700	1.6912	1.6912	0	"	법무부 주택 조합장	
"	"	30	"	0.1400	0.1400	0.1400	0	"	"	
"	"	28	"	0.3900	0.3900	0.3900	0	"	"	
"	"	29-12	"	0.0500	0.0500	0.0500	0	"	"	
"	"	29-8	"	0.1600	0.1600	0.1600	0	"	"	
"	"	29-9	"	0.0600	0.0600	0.0600	0	"	"	
"	개 봉	53-3	"	4.3200	4.3200	2.2220	2.0910	"	대한주택공사총재	
"	산 림	105-11	"	1.0505	1.0505	1.0505	0	"	영등포구 신대방동 617	주규완
"	고척	7-6	"	0.0500	0.0500	0.0500	0	"	영등포구 고척동 230	조충묵
"	상 도	47-52	"	0.0105	0.0105	0.0105	0	"	영등포구 상도동 154	조복술
"	화곡	47-1	"	6.4210	6.4210	2.0000	4.4120	"	영등포구 구로동 222-13	박승업
"	능촌	11-1	"	1.8600	1.8600	1.8600	0	"	영등포구 목동 324	최승호
"	반포	85-5	"	2.5726	2.5726	1.3310	1.2416	"	사단법인 4.19 유족회	추은석
"	봉천	24-1	"	7.5700	7.5700	6.3716	1.1914	"	서대문구 냉천동 4	이용한
"	"	24-3	"	0.1000	0.1000	0.1000	0	"	"	"
"	"	62-1	"	1.2900	1.2900	0.2710	1.0120	"	"	"
"	오 류	43-19	"	0.5400	0.5400	0.5400	0	"	용산구 보광동 1-10	김영두
"	"	8-35	"	0.0100	0.0100	0.0100	0	"	동대문구 창신동 9-88	배의상
"	"	8-37	"	0.1100	0.1100	0.1100	0	"	"	"
"	"	18-36	분포	0.0214	0.0214	0.0214	0	"	"	"
"	"	14-25	"	0.0314	0.0314	0.0314	0	"	"	"

소 재 지			지 목	지 적	지 정 면 적	해 제 면 적	잔 번 적	해 제 사유	소 유 자	
구	동	지 번							주 소	성 명
영등포	신 립	161-2	임야	0.2600	0.2600	0.2600	0	타용도사용	성동구신당동 251-63	박 남 실
"	고 척	44-1	"	1.1700	1.1700	1.1700	0	"	충북괴산군괴산면행촌리 208	윤 주 경
"	봉 천	142-1	"	0.5820	0.5820	0.5820	0	"	성북구번동 464-26	서 봉 현
"	"	142-2	"	0.0310	0.0310	0.0310	0	"	"	"
"	"	78-2	"	0.4200	0.4200	0.4200	0	"	종로구삼청동 119-2	황 석 흥
"	화곡	43-7	"	0.3200	0.3200	0.3200	0	"	종로구원남동 28-9	현 양 미
"	상 도	67-12	"	2.7626	2.7626	2.7626	0	"	육 본 수 송 감	
"	신 립	85-30	"	0.0620	0.0620	0.0620	0	"	영등포구신림동산79	조 인 익
"	봉 천	108-1	"	0.1716	0.1716	0.1716	0	"	영등포구봉천동 544	엄 필 무
"	오 류	23-1	"	1.0400	1.0400	1.0400	0	"	공군본부 (국)	
"	"	23-2	"	0.8400	0.8400	0.8400	0	"	"	
"	"	23-4	"	0.7200	0.7200	0.7200	0	"	"	
"	"	25-2	"	3.3200	3.3200	3.3200	0	"	"	
"	"	16-1	"	3.4500	3.4500	3.4500	0	"	"	
"	신 율	158-8	"	0.0300	0.0300	0.0300	0	"	성북구동선동1가15	고 일 석
"	대 방	75-12	"	0.0022	0.0022	0.0022	0	"	영등포구대방동 73-2	윤 역 섭
"	봉 천	109	"	0.4203	0.4200	0.4200	0	"	영등포구상도동362-2	엄 달 주
"	"	172-2	"	0.2903	0.2903	0.2903	0	"	성북구동소문동 4가 252	최 호 정
"	"	172-10	"	0.0114	0.0114	0.0114	0	"	"	"
"	"	172-11	"	0.0111	0.0111	0.0111	0	"	"	"
"	"	172-13	"	0.0322	0.0322	0.0322	0	"	"	"
"	"	172-15	"	0.0018	0.0018	0.0018	0	"	"	"
"	"	172-16	"	0.0005	0.0005	0.0005	0	"	"	"
"	"	172-20	"	0.0124	0.0124	0.0124	0	"	"	"
"	"	172-22	"	0.0323	0.0323	0.0323	0	"	"	"

소 재 지			지목	지 적	지 정 면 적	해 제 면 적	잔면적	해제사유	소 유 자	
구	동	지번							주 소	성 명
영등포	본	11-8	임야	0.0101	0.0101	0.0101	0	타용도사용	영등포구본동 산 11-8	신 은 식
"	상 도	47-51	"	0.0215	0.0215	0.0215	0	"	영등포구상도 동 47-51	박 중 양
"	신 립	133-1	"	4.1600	4.1600	1.6620	2.4910	"	대검찰청 주택조합장	강 재 권
"	"	151	"	2.5900	2.5900	2.5900	0	"	영등포구당산 동 4가 1	이 재
"	봉 천	161-7	"	0.2702	0.2702	0.2702	0	"	노량진세무서	
"	"	101-167	"	0.0708	0.0708	0.0708	0	"	"	
"	오 류	19-18	"	0.0600	0.0600	0.0600	0	"	영등포세무서	
"	신 월	92-1	"	2.5600	2.5600	2.5600	0	"	고려서적주식회사	이 학 수
"	봉 천	143	"	0.6600	0.6600	0.5805	0.0725	"	종로구종로4가52	김 성 봉
"	"	144	"	0.8000	0.8000	0.3805	0.4125	"	"	"
65필지				49.6515	39.2803	30.7404	8.5329			

공 고

작 일 부

4. 취 소 면 적

8,596.080

5. 시 행 자

서울특별시 장

6. 시 행 인 가 기 간

1972 (인가일) - 1974.12.30

7. 인 가 신 청 기 간 지 정

서울특별시 공고제 254 호 (70.12.14)

공고 번호 및 일자

8. 비 고

◎서울특별시 공고제 53 호

영등포지구획정리사업

추가지구시행인가

1. 서울특별시 영등추가 지구토지 구획

※ 건설부공고제 13 호

서울특별시 장의 신청에 따라 서울 내
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다음
과 같이 취소 하였기 공고한다.

1972.2.23

건설 부 장 관

1. 공고번호 및 일자

건설부공고제 46 호 (71.6.11)

2. 사 업 명

서울내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

3. 시 행 지 구

서울특별시 성동구 신원동, 양재동, 염
곡동, 새곡동, 내곡동, 장지동, 율현동

정리사업 시행인가를 토지구획정리사업
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
같이 공고합니다。

2. 동 계획공람공고(서울특별시 공고 제
215 호 71.10.5) 지역중 일부지역
은 용도지역(녹지지역)관계로 제척되

었음
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구획정리 2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
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리고 있으
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
지는 이공고로 가름합니다。

사 업 개 요

지 구 명	시 행 면 적	시 행 지 구 동 명	시 행 기 간
영동추가지구	1,755,100. (530,645 명)	영등포구 방배동, 사당 동, 서초동, 양재동, 우 민동 일부	1971.12.28 1975.12.30

1972. 3. 10

서울특별시장